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 20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강릉시 의회 의장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 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양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 준공 후 1년 이내 증축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잦은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

(안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축주 또는 소유주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적용 산정·징수하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합류식 지역 원인자부담금에 정화조 설치비용이 부과될 경우 이중부담이 되므로, 합류식 지역에서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공제한 후 부과하여 분류지역과 합류지역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안 제19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중 “신축, 증축, 용도변경” 을 “신축·증축·용도변경” 으로, “10세제곱미터/일” 을 “10^m³/일” 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을 “10^m³/일을 초과하는 양.” 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배출하지만 분류식하수관거 구간에 해당되어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 “배출할 경우 분류식 지역에서는” 으로, “원인자부담금과” 를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합류식 지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에서” 로, “합산하여” 를 “공제한 금액을” 로 한다.

별표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에

(제19조제1항 관련)

(오수량 : m³/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B)	총오수량(C) (A+B)	부과량(D)	적용방법	증가량(E)	총오수량(F) (C+E)	부과량(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5 (미부과)	3	8	-	(C)<10 미부과	1	9	-	신축 당시부터 10m ³ /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행방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7	15	15			
5 (미부과)	7	12	12	(C)>10 전체부과	5	17	5			

- 비고 :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 전체부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 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 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한다.</p> <p>1. (생 략)</p> <p>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별표 5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p>가. (생 략)</p> <p>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u>신축, 증축, 용도변경</u>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u>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u> 경우 <u>10세제곱미터/일을</u> <u>초과하는 양 <단서 신설></u></p> <p>3. ~ 6. (생 략)</p>	<p>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 인자부담금)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신축·증축·용도변경</u> ---- ----- <u>10m³/일</u> ----- ---- <u>10m³/일을 초과하는</u> <u>양.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u> <u>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u> <u>로 한다.)에 증축, 용도변</u> <u>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u> <u>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u> <u>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u> <u>량을 포함한다.</u></p> <p>3. ~ 6. (현행과 같음)</p>

7.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오수를 배출하지만 분류식하수관거 구간에 해당되어 정화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과 정화조 설치비용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정화조 설치비용의 산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7. -----

----- 배출할 경우 분류식 지역에서는 -----

-----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합류식 지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에서 -- 공제한 금액을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5]

현 행								개 정 안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9조제1항 관련)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9조제1항 관련)											
(오수량 : m ³ /일)								(오수량 : m ³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E)>10 전체부과						6	9	-	(E)>10 전체부과	
						12	15	12	(B)+(E)<10 미부과						12	15	12	(B)+(E)<10 미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11	22	11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11	22	11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범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6	18	-		
						12	24	12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22	-							6	22	-			
					12	28	12							12	28	12			
10 (부과)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6	19		-	
						12	25		12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7	17	-	(B)<10 미부과	2	19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6	23	3							6	23	3		
						12	29	12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6	27	-							6	27	-			
					12	33	12							12	33	12			

비고)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 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비고 :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 전체부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법규명: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